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52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윤제선
피고, 피항소인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김포시장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구합5085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2. 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0행의 "12억 8,990만 원"을 "1,300,189,200원"으로, 제5면 도표 내 2행의 "2018l. 7. 9."을 "2018. 7. 9."로, 제5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지방세법이"를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으로, 제7면 3행의 "판결 등"을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3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⑤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수용과 경매는 국가의 주도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경매에 대하여도 원시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7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나(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는 매매의 일종으로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앞서 본 사정 및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김제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7

목 록

1.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8. 8.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8. 8. 28.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3.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18. 8. 24.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4.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 8. 7. 원고 D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5. 피고 김포시장이 2018. 8. 14. 원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끝.